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2,554,590	17,476,638
일반회계	567,860,658	17,035,820
특별회계	14,693,932	440,818
기타특별회계	14,693,932	440,8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0,975	9,029
수질개선 특별회계	392,780	11,78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019,152	30,575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73,090	14,193
주차장 특별회계	2,207,656	66,230
기반시설 특별회계	52,462	1,5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0,246,807	307,40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010	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173,09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